

  		<b>보도자료</b> www.customs.go.kr 대변인실 042-481-7616~7	
<b>보도일자</b>	<b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		
<b>배포일시</b>	2020. 2. 20.(목) 14:00	<b>담당 부서</b>	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관세청 법인심사과
<b>담당과장</b>	이호섭 044-215-4450 김재홍 042-481-7980	<b>담당 사무관</b>	김동현 044-215-4452 노지선 042-481-7656

##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

- 정부는 '20.2.20.(목) 14:00 한국무역센터에서 「확대무역전략 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」를 개최하여 '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'을 발표하면서,
  -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·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,
  -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(高)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(低)을 적용하여 관세\*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

\* 관세 = (물품가격+운입+보험료 등) × 관세율

-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\*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\*\*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 되어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,

\*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 지난 2.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 발생

\*\*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

-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

< 현장 간담회 개최 내역 >

- ① 2.7.(금) 경제부총리 주재 코로나19 현장 간담회
- ② 2.11.(화) 관세청장 주재 코로나19 수출입 피해산업 지원 간담회
- ③ 2.13.(목)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경제인 간담회

□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 「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여, (행정예고: 2.20.~2.24.)

-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 운송하는 물품\*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,

\*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대상과 적용 기간을 별도 공고(2.25. 예정)

-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.5. (코로나19 관련 세정·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) 수입신고한 물품 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임

□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

-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임

##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

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을 공고합니다.

2020. 2. 25

관세청장

- 다 음 -

### 1. 적용 기간

- 수입신고일 기준, '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「주의」 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

### 2. 대상 물품

- 완성차 제조에 투입되는 「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(HS 8544.30-0000)」

**참고**

**안내문**

## 1. 고시 개정 이전 항공운임으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정청구 방법

- 납세신고 한 세관(심사정보과 또는 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)에 경정청구
  - “코로나19” 발생 이전에 선박으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수입신고필증, 관련 계약서 등) 제출
  - 완성차 제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완성차 제조 업체가 수입하거나,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납품계약서)
  - 경정청구시 정정사유(99) “기타(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소급 적용)”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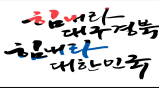
## 2. 고시 개정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한 운임 신고 방법

- 신고운임
  - 운송수단만 변경(선박→항공기)하였을 경우 : “코로나19” 발생 이전 선박으로 수입하였을 당시 신고하였던 선박운임
  - 거래처가 변경되어 수출국이 변경되었을 경우 : 해당 수출국의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
- 수입신고시 관세사 기재란에 “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적용” 기재

## 3. 운임특례 적용품목 확대요청 관련 접수처

-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
  - 해당 물품(HS 10단위), “코로나19” 발생 전·후 운송수단, 거래처, 수출국 변경사항 등 기재

※ 유의사항 : 동 항공운임 특례 적용 관련 사실관계 등은 추후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시	2020. 3. 27.(금)	담당부서	관세청 법인심사과	
담당과장	김재홍 042-481-7980	담당자	노지선 042-481-7656	

##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

- 관세청(청장 노석환)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,
    - 지난 2월 20일 ‘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’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.
  -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(HSK 8544.42-2090), 직류전동기(8501.10-1000)이며,
    -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\*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.
- \* 코로나19 관련 세정·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

**[2.20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주요 내용]**

- (검토배경)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애로사항 접수
- (주요내용)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·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\* 부담을 완화
  - \* 관세 = (물품가격+운임+보험료 등) × 관세율 //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
- (적용기간) 코로나19 관련 세정·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(2.5)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‘주의’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
- (적용대상)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
  - 1차(2.25) :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(HSK 8544.30-0000)

□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\*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,

\* 산업통상자원부·관세청 등 정부부처,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산업현장 애로 해결창구

○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(선박→항공)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했다.

□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며,

○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.

※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

- 인천 : 032)452-3639

- 서울 : 02)510-1378,1389

- 부산 : 051)620-6954

- 대구 : 053)230-5182

- 광주 : 062)975-8193

##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

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을 공고합니다.

2020. 3. 27

관세청장

- 다 음 -

### 1. 적용 기간

- 수입신고일 기준, '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「주의」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

### 2. 대상 물품

-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「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 전선(HS 8544.42-2090)」
-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「출력이 37.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 (HS 8501.10-1000)」



1. 고시 개정 이전 항공운임으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정청구 방법
  - 납세신고 한 세관(심사정보과 또는 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)에 경정청구
    - “코로나19” 발생 이전에 선박으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수입신고필증, 관련 계약서 등) 제출
    - 제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제조업체가 수입하거나,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납품계약서 등)
    - 경정청구시 정정사유(99) “기타(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소급 적용)” 로 신청
  
2. 고시 개정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한 운임 신고 방법
  - 신고운임
    - 운송수단만 변경(선박→항공기)하였을 경우 : “코로나19” 확산 이전 선박으로 수입하였을 당시 신고하였던 선박운임
    - 거래처가 변경되어 수출국이 변경되었을 경우 : 해당 수출국의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
  - 수입신고시 관세사 기재란에 “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적용” 기재
  
3. 운임특례 적용품목 확대요청 관련 접수처
  -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
    - 해당 물품(HS 10단위), “코로나19” 발생 전·후 운송수단, 거래처, 수출국 변경사항 등 기재
  
- ※ 유의사항 : 동 항공운임 특례 적용 관련 사실관계 등은 추후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